

#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참가규정

## 제1조. 용어의 정의

- ① 「마켓」이라 함은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을 말한다.
- ② 「운영위」라 함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운영위원회를 말한다.
- ③ 「참가자」라 함은 마켓이 명시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운영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마켓에 등록한 이를 말한다.
- ④ 「전시자」라 함은 운영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마켓의 부스에 등록하고 운영위가 승인한 마켓 참가자를 말한다.
- ⑤ 「광고주」라 함은 운영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광고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불을 완료한 참가자를 말한다.

## 제2조. 주최 및 목적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마켓을 병행한다. 이 규정은 운영위가 마켓에 참가하는 업체 및 개인과의 법률적 책임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 제3조. 참가 자격 및 참가자 의무

운영위는 다음과 같은 이에게 정식으로 마켓에 등록하여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영화·영상 산업과 연관된 활동 및 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혹은 단체
- 위에 열거한 곳에 고용 혹은 소속된 개인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운영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마켓에 등록된 참가자는 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가자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어떠한 형태의 사업도 행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마켓 참가를 금지한다. 또한, 참가자는 마켓에 등록함으로써 참가자의 정보와 사진이 마켓 출판물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 마켓배지

마켓배지의 등록은 ACFM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마켓배지를 등록한 참가자는 마켓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마켓배지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운영위의 심사 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마켓스크리닝은 등급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

참가자는 마켓배지를 양도, 임대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마켓의 출입이 제한되며, 신청비에 대한 환불도 불가하다.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해 마켓배지를 재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무료로 제공되는 마켓배지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 제5조. 부스

부스는 세일즈부스와 온라인부스를 포함하며 운영위는 '전시자'의 영업활동 또는 프로그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조와 13조에 기술한 이유, 혹은 운영위의 내부 판단에 따라서 부스 등록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운영위는 신청 및 결제 완료 순,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위치를 할당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할당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운영위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시자는 회사와 스태프, 라인업 및 판권확보작에 대한 정보를 마켓에 제공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는 ACFM 온라인 사이트 및 오프라인 전시공간에 전시되며, 정보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전시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위는 불명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전시자가 등록된 부스 내의 사진이나 영상, 회사 로고 등을 마켓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참가규정

설치 및 철거는 운영위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면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운영위에 보상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자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운영위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부스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 운영위는 필요 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전시자는 부스 및 전시품의 도난, 훼손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운영위에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 마켓스크리닝

마켓스크리닝은 부스 등록을 완료한 회사 또는 당해 부산국제영화제 월드/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선정작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전시자는 마켓스크리닝 예정 작품의 제목과 기본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마켓에 제공하여야 한다. 필름 정보 입력 및 상영본 업로드 등 마켓의 일정에 맞출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켓에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신청된 작품은 접수 순으로 운영위의 심사를 거쳐야하며,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내부 심사 규정에 맞지 않는 작품은 거부될 수 있다. 마켓의 일정에 맞추지 못할 경우 마켓스크리닝 신청이 취소되거나 마켓 출판물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

마켓스크리닝에서 법적, 기술적, 저작권 등의 문제는 참가자의 전적인 책임이며, 운영위는 참가자의 미 업로드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제7조. 광고

광고주는 모든 광고 콘텐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경우 마켓은 광고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접수된 광고가 기술 사양에 맞지 않을 경우 추가 기술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광고주에게 청구한다. 광고 구매 후 기한 내에 작품이 접수되지 않으면 광고주는 광고 및 환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제8조. 결제

부스, 옵션 서비스, 광고 (이하 「마켓서비스」)의 결제는 신용카드와 송금 결제가 가능하나, 마켓배지와 마켓스크리닝은 신용카드결제만 허용된다. 모든 마켓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는 등록 확정 후 발송되는 메일과 ACFM 공식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확인이 가능하다.

### 제9조. 취소 및 환불

마켓서비스의 취소는 해당 항목의 접수 마감일까지 가능하다. 주최측의 취소 및 부스 업그레이드 재 구매의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자 측의 기타 사항으로 인한 결제 취소 시 30%의 행정 수수료를 차감한 후 환불된다. 다만, 해당 항목의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 제10조. 행사장 운영 규정

반려동물은 마켓의 행사장 내에 허용되지 않지만, 안내견과 장애인 안내 교육을 받는 동물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 문서를 통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ACFM 행사장 내에서 실연되는 전시, 이벤트 등에 관하여 특별히 명시된 사전 동의 없이는 촬영, 녹화, 녹음 등 모든 불법적 행위가 금지되며, 참가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물품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적발 시 운영위는 참가자/참가자에게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참가규정

## 제11조. 공공안전

모든 참가자는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운영위에서 안내하는 COVID-19 예방 지침에 적극 협조 해야한다.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에는 대피 해야하고, 참가자는 그 결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COVID-19 혹은 추가적인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할 경우 행사를 연기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모든 참가자들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2조. 차별 및 폭력 금지

운영위는 성별, 종교, 국적, 피부색, 연령 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언어 및 물리적 폭력을 금지한다. 위반 시 운영위는 참가자의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 면책

참가자는 참가자의 모든 정보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제 3자의 소송에 대하여 운영위와 관계자들을 면책하며, 이를 보장한다.

운영위는 마켓의 개최 날짜와 기간, 성격 및 규모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

운영위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이상으로는 보장하지 않는다.

## 제14조. 동의

마켓배지등록을 완료 한 참가자는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 위반시 마켓배지가 즉시 반환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가 비활성화되며, 운영위의 단독 재량에 따라 공식적인 경고와 환불없이 참가 제외 될 수 있다. 또한, 내부 논의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하며, 이듬해의 참가를 금지한다.

## 제15조. 규정의 해석 및 중재

이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지배되고 해석되며, 참가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배타적인 재판권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규정에 전술한 항목은 마켓의 이익을 도모하여 운영위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 규정에서 상술한 항목과 같이 수정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사)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영화의전당 비프힐 3층

E-mail. [market@acfm.kr](mailto:market@acfm.kr)

Website. [www.acfm.kr](http://www.acfm.kr)